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대행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안전공단만 안전진단을 전담하게 하는 시설물을 정할 때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마. 과태료 부과권자 구체화(안 제47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관리·감독범위에 따라 구체화

바. 시설물 안전점검에 신기술 활용 활성화(안 별표10)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

사. 서류제출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서류를 포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mailto: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358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푸스코리아(신동일)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롯데건설(주)(하석주) ④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이석우)  
 나. 전화번호 : ① 031-322-3551 ② 02-3433-7114 ③ 02-3480-9114 ④ 041-351-4101

## 2. 명칭 :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무기단열재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연도금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고, 그 내부를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충전한 트러스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로도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 안전성과 구조 안정성도 확보한 기술이다

<범위>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들고, 구조틀 사이에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삽입한 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

##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한편,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